

재단법인 윤경재단

수신자 : 서울대학교 총(학)장

(참조) 장학과장

제 목 장학생 추천의뢰

1.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경재단 제19기 (2018년도 제1학기)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별첨 장학생 추천 요강에 의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2명을 추천하여 주시면
그중에 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별첨 : 1) 장학생 추천요강 1부.
2) 장학금 지급규정 1부.
3) 장학생 신청서 2부.
4) 장학생 추천서 2부. 끝.

재단법인 윤경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김효영

사무총장 김용태

이사장 이두용

시행 윤경재단-21721 (2017. 12. 27.) 접수 ()

우 03028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7

전화 (02)737-1777 전송 (02)735-5150 / admina@nate.com

장학생 추천요강

1. 추천대상학과 및 인원

대 상 학 과	추천의뢰인원	지급예정인원
사회과학대학	2	1
계	2	1

※2018년도 1학기에 2학년 진학 예정자

2. 추천 대상자 자격 및 구비서류

별첨 윤경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함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별첨 윤경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함

4. 장학금 지급액

등록금 전액

5. 서류구비

1) 기 간 : 2018년도 1월 25일한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7 재단법인 윤경재단 사무국

6. 기타사항

- 1) 추천 대상 학생의 성적은 1학년 1,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2) 본 윤경재단은 상기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학생에 대해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을 통하여 장학생을 엄선 선정하여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3) 본 재단 장학생 선발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추천 학생 보호자의 재산세 납세 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과 의료보험 납부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말소자 포함)을 서류 제출시 필히 첨부바람.
- 4) 장학금 신청서는 자필이어야 함.
- 5) 추천 대상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 1명씩 추천바람.

윤경 장학금 지급규정

재단법인 윤경재단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한국정치발전과 국민복증진에 큰 공적을 남긴 윤경 이재형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고매한 정신을 현양(顯揚)하는 재단법인 윤경재단(이하"재단"이라 칭함)이 제정한 윤경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칭함)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위원회)

1. 재단은 장학생 선발, 장학금 내역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시행을 위하여 재단 내에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2. 장학위원은 재단이사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로 한다.
3. 장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대학이나 대학원(박사과정 및 해외유학생 포함)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전하며品行이 단정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 중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장학생 후보 추천범위)

1. 고등학교 :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에서 상위 1/5 이내인 자
2. 대학 : 학업성적이 학교별 기준 성적으로 B학점 이상인 자, 또는 해당학과 동학년 전체의 1/3 이내인 자
3. 대학원 및 박사과정(해외유학생 포함) : 위원회에서 추천, 결의 선발한다.

제 6 조 (피추천자의 신청절차)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재단에서 지정한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재단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재단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재단소정양식)
2. 학교장 추천서(재단소정양식)
3. 전 학년 성적증명서(학교소정양식)
4. 학생신상기록부(학교소정양식)
5. 자기소개 및 학습계획서(200자 원고지 5매 내외)
6. 서약서(재단소정양식)
7. 학생 보호자의 재산세 납세 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
8. 의료보험 납부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10. 명함판사진 2매

제 7 조 (장학생 선발)

1. 장학생은 각급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2. 장학생은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1항에 규정한 추천에 의하지 않고도 선발할 수 있다. 단, 본 항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의 수는 전체 장학생 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매학기 시작 전 본인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등록 기간 중 재단이 직접 학교로 송금한다.

제 9 조(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2. 퇴학 또는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질병,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3. 학업성적이나 기타 자격이 선발기준에 미달 또는 위배되는 자
4.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재단의 장학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
6.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제 10 조 (장학생을 위한 행사 등의 참여)

장학생은 장학생들의 인격도야를 도모하고 상호유대를 강화하며 장래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단이 주최하는 연구 활동 등 각종 행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참가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여 시행하고 추후 재단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규정은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推 薦 書

1. 姓 名 (漢文) (男, 女)

2. 生年月日 19 年 月 日 (滿 歲)

3. 所 屬 大學(校) 大學

學 科 學年

4. 本 籍

5. 現 住 所

6. 指導教授 推薦 意見

上記 學生을 貴 財團의 獎學金 申請資格要件에 따라 嚴格히
審査하여 推薦합니다.

西紀 19 年 月 日

推 薦 人 印

總(學)長 印

財團 雲 耕 財 團 貴中
法人

* 지도교수의 추천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도장을 받을 것.

獎學金 申請書

1. 姓 名		(漢文)		사 진 (반명함판)
2. 住民登錄番號		3. 性 別	男, 女	
4. 所 屬		大學校	大學 學科 學年	
5. 本 籍				
6. 現 住 所		電話.		
7. 家族事項				
姓 名		關 係	住 民 登 錄 番 號	職業(職場 등 具體的으로 記載)
8. 保護者 關係事項				
姓 名			現 住 所	
財 產	住 宅	自家, 傳貰, 月貰(만원)		田畝 : 坪
	動 產	만원	總財產 : 만원	
月收入額				
9. 學費調達方法				
本人은 貴 財團의 獎學生이 되고자 所定의 書類를 갖추어 保護者の 連署로 申請書を 提出합니다. 19 年 月 日 申 請 人 印 保 護 者 印 財團 雲 耕 財 團 貴中 法人				